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75호 2014. 12. 30.(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133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134호 사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135호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1136호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사천시 조례 제1137호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5
- 사천시 조례 제1138호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9
- 사천시 조례 제1139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37
- 사천시 조례 제1140호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민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사천시 조례 제1141호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51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71호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55
- 사천시 규칙 제57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6
- 사천시 규칙 제573호 사천시 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59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96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83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33 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5)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7)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8)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9)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0)

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1)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2)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3)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4)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5)

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6)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7)

사천시 조례 제113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 를 “시”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이 조례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조 중 “경리관” 을 “재무관”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되,” 를 “공인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18)

“소속행정기관장”을 “소속 행정기관장”으로 하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2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 담당부서장”을 “정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2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공인의 글자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19)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천시장	<u>3.0센티미터 정방형</u>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공인	
가. 4·5급 공무원인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공인	<u>2.4센티미터 정방형</u>
나. 6급 공무원인 출장소장 공인	<u>2.1센티미터 정방형</u>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u>재무관</u> ,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2센티미터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1.8센티미터 정방형
4. 청인(각종 위원회)	<u>3.6센티미터 정방형</u>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20)

사천시 조례 제113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20가구 내지 50가구”를 “2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개반 내지 9개반”을 “3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하고,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21)

제4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하고, 제5호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와 제20조 중 “각호의 1” 를 각각 “각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제9조제2호와 제20조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판결을 받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7조 중 “범위안” 를 “범위”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세대원중” 을 “세대원 중” 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제9조제2호, 제20조제2호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22)

사천시 조례 제113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센터장) ① 센터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센터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23)

1. 이사회 의결 사항의 집행
2. 사무국 제반 업무의 수행 및 소속 사무요원의 지휘·감독
3.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
년은 65세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임용되어 근무 중인 센터장의 임기 적
용은 종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의 남
은 기간까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24)

[별표 1]

1. 센터장 채용 자격요건

자 격 기 준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행정경험이 20년 이상인자	
2. 대학·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4.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자	
5.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라 함은 청소년(지도학)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을 말한다.

※ “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25)

사천시 조례 제113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사천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26)

제3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면·동별 3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3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27)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실비보상)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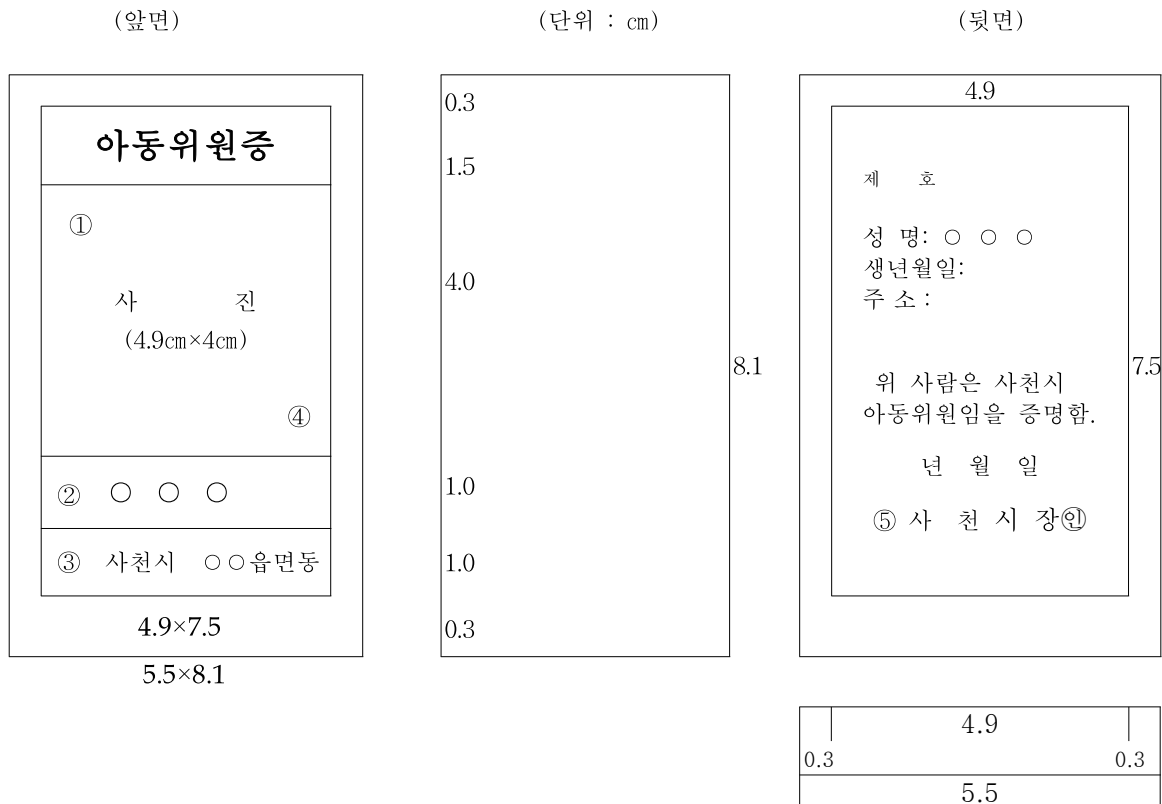
제 375호 (28)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아동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8조 관련)



- (비고) 1. 아동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아동위원증의 ① 내지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4cm) ② 성명 ③ 소속기관명
 ④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29)

사천시 조례 제 113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실행의 주체) 센터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사람이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센터수와 아동 수를 감안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1)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복지 사업 또는 기관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이용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 부모 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4. 맞벌이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②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센터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센터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2)

7. 센터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사업
9. 새터민·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10. 센터 간 협력·교류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보조)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난방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지출 비율이 높은 센터
2. 심화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센터에 비해 높은 센터
3. 지도점검 결과 점검실적이 우수한 센터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3)

제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4)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과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1명
2.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3. 아동복지교육관련 전문가
4.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2명
5.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상담 전문가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7. 사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자 1명
8.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시설 법인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5)

7.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 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 결과는 필요 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36)

제15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7)

사천시 조례 제113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8)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3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0)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용자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1)

제9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재산세는 「사천시 시세감면조례」 제7조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중 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와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와 제37조를 따른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2)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3)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4)

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 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 내·외 기업이 지정지구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5)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 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외 소재기업이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6)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및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7)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제 5 장 보 칙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48)

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49)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각종 지원 등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50)

사천시 조례 제114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의2” 를 “법 제10조의3” 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를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 안” 를 “예산의 범위”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51)

사천시 조례 제114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52)

제3조 중 “사천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을 “시장”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으로, “의 규정에 따라” 를 “에 따라 매년도” 로, “장기예치기 금액” 을 “의무예치금액” 으로, “당해연도사용기금액” 을 “사용가능액”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4조 조명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로,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 한다.

제5조 조명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를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로, 같은 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당해연도 사용기금액” 을 “사용가능액” 으로 한다.

제6조 중 “의 규정에” 를 “에” 로 하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보강
4. 재난피해시설(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53)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전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제1항 중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74조제6호에 따라” 로, “이주지원은” 을 “이주지원비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를 “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으로, “70%” 를 “70퍼센트” 로,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를 “에”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54)

제11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같은 호 중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을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2조의1 중 “가 정하는 바에” 를 “에” 로 하고, “범위 안에서” 을 “범위에서” 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55)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7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당직근무자에게는 5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를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56)

사천시 규칙 제57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명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양정의 기준)” 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적” 을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 적극성” 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내부종결 처리” 를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57)

제2조의2제2호 및 3호 중 “별표 1 적용” 을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4 까지 적용”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비위 및 징계의결요 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건 비위” 를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로, “성희롱” 을 “성희롱, 「공직자윤리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 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 표창” 을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으로 하고 “연구사, 지도직공무원을” 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 으로 하고 , “광역시장” 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를 “「모범공무원규 정」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요구된 자” 를 “요구된 사람”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중한” 를 “무거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를 “제34조에 따른” 으로 하고, “당해” 를 “그 ” 로하고 “있고” 를 “있고,”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58)

제7조 조명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를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로 하며,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를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59)

사천시 규칙 제57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 (6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61)

7. “연구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이전보조금”이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62)

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3)

제4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용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용자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용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50퍼센트 이내
4.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용자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7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외국인 투자의 요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4)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5)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의 최초 착공신고일 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11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6)

제12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신청사항의 제출) 시장은 조례 제12조부터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12조부터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 등)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7)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 준수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68)

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7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칙에 정하는 기간이란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시장이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융자금은 융자금을 상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 제19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안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69)

③ 조례 제25조제1항의 융자금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 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 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규정」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따라 쓴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 (70)

【별지 제1호서식】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 화 (H.P)	
			E-mail	
	FAX			
입 주 유 형				
공 장 소 재 지				
부 지 면 적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기준공장면적율(%)	
평 당 가 격	원	총 부지가격	백만원	
부 지 계 약 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 투 자 액	백만원	시 설 투 자 액	백만원	
공 장 설 립 일		업 종 (분 류 번 호)	()	
용 자 신 청 액	원	용 자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71)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투자내용		금	원(USD	상당),	%
금액 및 비율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시설입지 내역	소재지				
	면적	총 부지면적 : m ² , 시설면적 : m ² (구입가격 : 원/m ²)			
	업종			종업원 수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73)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투자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 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투자 내용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	
투자 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증자	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	년 월 일	공장등록일자	년 월 일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	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지급액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p>「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3. 공장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조금 신청업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76)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투자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		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		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		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77)

【별지 제8호서식】

입지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 소재지 (대표자 주소)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창 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 신설(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분 양 가	원/m ²	분양가 납부방법	년거치 분할상환
분 양 면 적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공장시설투자금액	백만원	신규채용상시근로자	명
보조사업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대표 (인)			
사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 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승인 등을 의제 하는 경우에는 제외)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6. 공장 시설투자 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7호 관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9. 기타 증빙자료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78)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또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전 화	F A X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창 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일	업 종 (분류번호)	()	
상시고용인원	총 인 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보조금신청액	백만원(USD 상당) (도비 : 시군비 :)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 고용사실증명서 1부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1년분)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이전 또는 증설후 신규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79)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 F A X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일		업종 (분류번호)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명)	신규채용인원(명)	기존공장이전인원	
공장시설투자금액	백만원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기관		소요금액	백만원	
보조금신청액	백만원(USD 상당) (도비 : 시군비 :)			
<p>「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사천시장 귀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공장이전 또는 증설의 경우는 이전 또는 증설 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고용보조금 신청 업체는 제외) 1부 3.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사 천 시 공 보

제375호(81)

【별지 제12호서식】

(본점)이전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법인주소소재지)		전화	
			F A X	

본 점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점소재지		
공장소재지		
본점근무인원		
사 육 가 액	원	원
소 유 형 태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취득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취득
보 조 금 신 청 액	백만원 (도비 : 시군비 :)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4. 기존 사업장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82)

【별지 제13호서식】

- 입 지 보 조 금
 - 고 용 보 조 금
 - 교 육 훈 련 보 조 금
 - 시 설 보 조 금
 - 이 전 보 조 금
- 정산서

1. 보조사업 수행자

상 호 또는 명 칭		대 표 자		성 별	
소 재 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업 종 (주 생산품)		사 업 개 시 일 자			

2.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수 행 내 역				
사 업 기 간		보 조 금 액		

3. 정산내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사천시장 귀하

- 붙 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등 사본 1부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83)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4- 196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사천시 의회 의결(2014. 12. 19.)을 득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30.

사 천 시 장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532,856,808	534,484,926	△1,628,118
일 반 회 계	447,363,581	448,545,303	△1,181,722
특 별 회 계	85,493,227	85,939,623	△446,396
상 수 도 사 업	16,490,812	16,490,812	0
하 수 도 사 업	8,035,272	8,035,272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88,447	1,888,447	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525,028	525,028	0
의 료 급 여 기 금	2,018,312	2,019,312	△1,000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	340,224	1,040,224	△700,993
수 질 개 선 사 업	861,588	859,668	1,920
농 공 단 지 사 업	3,943,954	3,711,119	232,83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762,043	2,768,043	△6,000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129,256	129,256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92,108	492,108	0
도 시 개 발	1,255,572	1,255,572	0
종 포 일 반 산 업 단 지	44,000,000	44,000,000	0
주 택 사 업	445,082	444,859	223
지 하 수 관 리	279,993	279,993	0
농 어 업 발 전 기 금	2,025,626	2,000,000	25,626

사 천 시 공 보

제 375호 (84)

□ 세 입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532,856,808	534,484,926	△1,628,118
일 반 회 계	447,363,581	448,545,303	△1,181,722
지 방 세 수 입	51,269,000	48,269,000	3,000,000
세 외 수 입	15,471,923	16,907,608	△1,435,685
지 방 교 부 세	177,650,636	176,350,636	1,300,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078,000	17,078,000	0
보 조 금	150,903,088	155,651,268	△4,748,18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4,990,934	34,288,791	702,143
특 별 회 계	85,493,227	85,939,623	△446,396
세 외 수 입	17,199,199	18,424,595	△1,225,396
보 조 금	2,477,187	2,438,187	39,000
지 방 채	44,000,000	44,000,00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1,816,841	21,076,841	740,000

□ 세 출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532,856,808	534,484,926	△1,628,118
일 반 회 계	447,363,581	448,545,303	△1,181,722
정 책 사 업	351,154,938	353,651,733	△2,496,795
재 무 활 동	25,161,690	23,721,690	1,440,000
행정운영경비	71,046,953	71,171,880	△124,927
특 별 회 계	85,493,227	85,939,623	△446,396
정 책 사 업	80,568,494	79,984,532	583,962
재 무 활 동	3,186,561	4,224,918	△1,038,357
행정운영경비	1,738,172	1,730,173	7,999